

상심부서인

### 서울고등검찰청

우편번호/137-740 주소/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 전화/ 02-530-3114

2008. 9. .

수신자 참여연대 귀하 발신자 서울고등검찰청  
(공동대표 임종대) - 담당: 이상민 간사

제 목 항고사건 처분통지 검사 차 유 경



성명불상 의 2 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

통지해 드립니다.

처 분	① 사건번호	2008 불항 제 5779호
	② 연 월 일	2008. 9. 가.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;">29</span>
	③ 결 과	항고기각
이 유	불기소처분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음	

#### 비 고

○ 본 항고사건은 주임검사와 변호사 및 법학교수,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된 항고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① 고소인 및 「형법」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, 「공직선거법」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,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(검찰청법 제 10조제3항)를 각각 하실 수 있으며, 위 기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청(지방검찰청 또는 지청)에, 재항고장은 우리청에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.